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본 (주)제이에프헬스케어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제2조 제3항의 급여품목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 선택 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 품목』을 일정 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 전용 품목
 - 가. 이동변기
 - 나. 목욕의자
 - 다. 성인용보행기
 - 라. 안전손잡이
 -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 사. 지팡이
 - 아. 욕창예방 방석
 - 자. 자세변환용구
 - 차. 요실금팬티
2. 대여제품
 - 가. 수동혈체어
 - 나. 전동침대
 - 다. 수동침대
 - 라. 이동욕조
 - 마. 목욕리프트
 - 바. 배회 감지기
 - 사. 경사로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 연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 복지용구 제공방법**

1. 판매제품

가. 판매제품은 수급자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해당지자체 신고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한다.

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 및 대여 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한다.

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등 을 실시하여야한다.

2. 대여제품

가.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년 내지 월 단위로 수급자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나.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 수리비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 시킬수 없다.

라. 수급자가 대여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대여기간을 산정 할 수 있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 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거나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 에는 보호자 및 요양보호사 등이 서명 작성할 수 있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가. 기관의 의무

1)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3)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 분	공단부담 (%)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 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4% - 91%	6% - 9%	100%중 94%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9%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